

울진군 공고 제2013 - 61 호

공 고

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직권면직 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1월 25일

울 진 군



1. 직권면직 처분내용

소 속	직 급	성 명	처분내용	처분일자	직권면직일	처 분 사 유
울진군 환경위생과	기능8급 (위생)	김용국	직권면직	2013.1.16	2012.11.09	행방불명으로 직권휴직기간 만료 후 직무 미복귀

2. 참고사항

-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